

각국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총 론>

- 각국의 재정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음
 - 미국은 19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 부채규모도 GDP 대비 80%에 근접하도록 증가
 - 캐나다는 2008년까지 10여 년 동안 흑자재정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기부양책의 종결 등으로 재정상황이 회복되어 2015년부터는 균형 혹은 흑자재정 전망
 -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오랜 경기침체 및 거듭되는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확대 및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세출 증대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
 -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3% 내외의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
 - 독일은 2008년 이전까지는 균형 혹은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으며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2010년 말 경기부양책 종료 및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영국은 FY2007/08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 및 부채 규모 급속히 증가(부채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중)
 - 호주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예산 흑자를 실현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적자 기록

□ 본고에서는 각국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세입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고,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음²⁾

○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정책

- 세입 측면

- ① 신규 세목 신설: 금융위기 책임금 부담 및 수퍼펀드세 부활(미국), 은행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핵연료세 신설(독일), 은행세, 온라인 광고세 및 스톡옵션 과세(프랑스), 은행세(영국), 특별세 및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호주)
- ②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 확대: 성과보수를 일반소득처럼 과세(미국), 연금소득 과세 대상 확대(프랑스)
- ③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소득세, 간접세, 보험료세, 자본이득세 인상(영국), 소비세율 인상 논의(일본)
- ④ 세제혜택 축소: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미국, 일본), 고용보험 부과세 인하 정책 중단,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폐지(미국), 주택수리환급 혜택 종료(캐나다), 보험구입, 배당금, 소득세, 기업 자산, 모기지론 원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프랑스), 소득세,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호주)
- ⑤ 자산매각: 영국

- 세출 측면

- ① 지출 통제: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미국), 행정부 인력 감축 및 보수 동결(프랑스), 공공부문 임금 동결 및 인력 감축(영국), 실질지출증가율 2%로 통제(호주)
- ② 지출 삭감: 재정사업 삭감(미국), 국방 및 해외원조, 행정비용 삭감(캐나다), 운영비용 절감(프랑스), 비효율적 공공사업 지출 삭감(영국), 중산층 이상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 미래대비 투자 예산 삭감(호주)

2) 편의상, 단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인면서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정리하였음.

- ③ 지출 효율화: 복지사업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미국), 전략검토를 통해 비용 절감(캐나다), 공공부문 효율화(영국),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 보증 및 예금보증정책 종료(호주)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정책

- 세입 측면

- ① 신규 세목 신설: 은행세, 온라인 광고세, 스톡옵션 과세(프랑스), 은행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핵연료세 신설(독일), 은행세 도입(영국), 자원세 도입(호주)
- ② 세율 인상: 소비세율 인상 논의(일본), 고용보험료율 인상(캐나다), 연금기여금 인상(프랑스), 사회보장세 인상(영국), 담배소비세 인상(호주)
- ③ 세제혜택 축소: 소득세, 법인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 자동 조세지출 삭감 기제(미국), 조세지출 축소(프랑스)
- ④ 세제개혁: 국제조세체제 개혁(미국), 조세회피 방지(영국)

- 세출 측면

- ① 지출 관리 정책: PAYGO 원칙 및 세출 삭감(일본), PAYGO 원칙, 대통령의 신속재원 폐지 권한 요구, 보건·의료 지출 억제(미국), 중앙정부 지출에 대한 제로증가율 원칙(프랑스), 복지급여 상한 설정(영국)
- ② 지출 삭감: 비효율적 세출 삭감(일본), 재량지출 삭감(미국),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통한 복지지출 삭감(영국), 공공사업 지연 및 국방비 삭감(독일)
- ③ 지출효율화: 법정지출 개선(미국), 지출분류 방식 변경 및 지출감사제도를 도입을 통한 지출효율화 제고(프랑스)
- ④ 사회보장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미국, 일본), 연금개혁(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급여제도 간소화, 의료개혁(영국)
- ⑤ 재정제도 도입: 신지출관리제도인 전략검토 도입, 과거에는 지출통제법, 지출관리제도 운영(캐나다), 다년도 예산제도, 중기재정 도입(프랑스), 헌법에 재정준칙 도입, 중기재정계획(독일)

		세입 측면	세출 측면
재정적자 감축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 수퍼펀드세 부활 - 고용보험 부과세 영구화 -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성과보수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 재정사업의 종류 및 삭감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리환급혜택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비 및 해외원조 삭감 - 정부 행정비용 삭감 - 전략검토를 통해 비용절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6: 자산매각, 성장잠재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6에서 세출 삭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인력 감축,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운영비용 절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동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인상 - 소득세 인상 - 간접세(유류세, 주류, 담배세) 인상 - 은행세 도입 - 보험료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 자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임금 동결/삭감 및 인력 감축 - 공공부문 효율화 - 비효율적 공공사업 지출 삭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규정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세입 확충 -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수해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세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지출 증가율 2% 내로 통제 (예산흑자 달성 시까지)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 -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 보증 및 예금보증정책 종료 - 수해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대비 투자 예산 감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 - 법인세 관련 세제감면제도 축소,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 이행 - 조세개혁안이 채택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조세지출을 삭감하는 안장장치 도입 - 국제조세체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YGO 원칙 도입 - 신속재원 폐지(expedited rescission) 권한 요구 - 재정위원회 보고서: 재량지출 삭감, 보건·의료 지출 억제, 법정지출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출관리제도인 전략검토(2007) - 지출관리제도(1995) - 지출통제법(1992) - 연금개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영전략(2010. 6) • 사회보장 경비 등 의무지출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 소비세율 인상 • 중장기적 세입개혁을 통한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 • 국채발행액 억제를 통한 재정상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개혁 - 재정운영전략(2010. 6) • 2011-13 항구적 세출 삭감 • PAYGO 원칙 • 세출 재검토를 통한 비효율적 세출 삭감 • 재정목표(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및 평가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조체제 마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혜택 축소(보험구입,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모기지론 원리금 등) - 세수 확대(은행세, 온라인 광고세, 연금소득 과세 대상 확대,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등) -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연금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도 예산제도 및 중기재정예산 - 지출 분류 방식 변경 및 지출 감사제도 도입 - 중앙정부 지출에 대한 제로증가율 원칙 도입(연금 및 채무상환비용 제외) - 연금개혁: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 - 의료개혁: 의료비지출 3% 내로 통제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핵연료세 등 신설된 세입항목 - 금융기관 구조조정법 - 적자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을 개정하여 헌법에 재정준칙 도입 • 채무제한규정: 2016년까지 구조적 재정적자 GDP 대비 0.35%로 축소 - 재정안정화위원회 설립 - 중기재정계획(2011-2014) - 2011년 긴축예산안상 사회보장 지출 삭감, 공무원 및 군 인력 감축, 왕궁 복원사업 등 공공건설사업 연기, 국방비 감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세(국민보험 기여금) 인상 - 은행세 도입 - 조세회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출 삭감: 고용지원수당 축소,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근로세액공제 동결, 장애생활수당 축소, 지방세 보조급여 삭감,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근로세액공제 혜택 축소, 연금혜택 축소 등 - 복지제도 개혁: 연금 및 의료개혁, 급여제도 간소화, 급여상한 설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세 도입 - 담배소비세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개혁: 수령연령 상향조정 등 -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